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제758호 2020. 7. 8.[수]



서	기관의	장
<u> </u>		
결		

고 시

제2020-82호 도로명주소 고시 ………………………… 2

공 고

회 람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고시 제2020 - 82호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 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0. 7. 8.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98-9 등 6건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조가야로 826-11 등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 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2)에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O 도로명주소 부여

일련	~ H ~ A	C and A	고	시 일	C 3 M H W II O	ul ¬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도로명주소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405-1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098-9	20090702	20200708	행정구역명(신원면+차황면) 반영	부여
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동례리 172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조가야로 826-18	20090702	20200708	거창군 가조면과 합천군 가야 면을 잇는 도로	부여
3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산98-2, 19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지산로 253	20091228	20200708	남하면 지산리를 지나 가조면 으로 가는 도로임을 반영	부여
4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대동리 1567-11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엄대1길 332-140	20090401	20200708	마을 뒷산이 엄정하게 뻗어내 려 대와 같이 생겼다하여 붙 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부여
5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1251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주암길 16-244	20090401	20200708	마을 뒤편 소류지 우측 작은 산아래에 배모양의 바위가 있 어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부여
6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구사리 산195-19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지리재길 155-168	20091228	20200708	지리재라는 지명이 반영된 도 로	부여
7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조가야로 826-20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조가야로 826-11	20090702	20200708	거창군 가조면과 합천군 가야 면을 잇는 도로	변경
8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조가야로 826-3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조가야로 826-21	20090702	20200708	거창군 가조면과 합천군 가야 면을 잇는 도로	변경
9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조가야로 826-33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조가야로 826-29	20090702	20200708	거창군 가조면과 합천군 가야 면을 잇는 도로	변경

거창군 공고 제2020-912호

##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2020년 7월 2일

## 거 창 군 수

-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 2. 개정이유: 인구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기업의 구직난 해소와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위하여 애향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부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

- 1) 제조업체 등 ⇒ 기업(안 제1조~제4조)
- 2) 기업에 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함
- 나. 애향장려금 지원대상 확대(안 제3조)
  - 1) 29세 ⇒ 34세
- 다. 그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서식은 규칙으로 규정

4. 입법예고 기간 : 2020. 7. 2. ~ 2020. 7. 22.(20일간)

####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경제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다. 제출할 곳

- 1)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경제교통과)
- 2) 전화 055-940-3373, 팩스 055-940-3349, 이메일 hure20@korea.kr

####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총괄담당 【☎(055) 940-33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ul><li>○ 성명(단체명) :</li><li>○ 주 소 :</li><li>○ 전 화 번 호 :</li></ul>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소재 기업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애향장 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애향장려금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향사랑 마음을 북돋우고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기업에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애향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 대상) ① 애향장려금은 군 소재 기업에 6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3 4세 이하인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 ② 애향장려금 지원대상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지원 신청 및 선발) ① 근로자는 소속 기업 대표의 추천서와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춰 애향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애향장려금 지원대상을 최종 선발한다.
- 제5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애향장려 금을 바로 돌려받아야 한다.
  - 1.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2. 장려금을 지원받고 6개월 이내에 주소를 이전한 경우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57호, 2019. 12. 31, 일부개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u>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한정한다.</u>
  -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③ 삭제 <2013. 7. 16.>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카. (생 략)
  -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 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 농림 · 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 · 임산물 · 축산물 ·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 · 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 · 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가.~거. (생 략)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마. (생 략)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가.~나.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 「청년기본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6호, 2020. 2. 4., 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의견 20-0024

#### 1. 질의요지

광주광역시 북구의 조례에서 자발적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자생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둔 경우에, 이를 근거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자생단체)에 대하여 <u>월 20만원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북구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u> 보조금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위반되는지?

#### 2. 의견

이 사안의 경우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질의요지의 내용을 북구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3. 이유

광주광역시 북구의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이하 "북구조례"라 함) 제15조에서는 "구청장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 자생단체, 동이 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한 물품 또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8조에서는 "이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시행규칙안」(이하 "북구조례 시행규칙안"이라 함) 제2조제2항 및 별표 1에서는 북구조례 제15조를 근거로, 주 2회 이상 청결관련 활동을 한 단체의 경우 회원 1인당 3시간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1만원으로 계산하여 실비를 지급하되, 한 단체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월 20만원을 상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의 조례에서 자발적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외의 단체로서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활동하는 각 지역의 부녀회 등 북구 조례 제15조에서 "자생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단체를 말하며, 이하 "민간단체"라 함)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둔 경우에, 이를 근거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월 20만원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북구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보조금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제23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9. 9. 17. 의견제시 19-0274, 2018. 5. 25. 의견제시 18-0094 등 참조).

살피건대,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호에 따르

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사업에의 보조금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보조금 지출의 요건은 보조금 지출의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라는 것이고 보조금 지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례에만 규정하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조례에 보조금 지출의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법」제23조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여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북구조례 제15조에서 "구청장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 자생단체, 동이 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한 물품 또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민간단체의 쾌적한 환경 조성활동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조례 제18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북구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상의 근거 및 위임에 따라 북구규칙안 별표 1에서 1개 민간단체에 대한 월별 보조금 지출금액 상한 등 북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된다고하기도 어려우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조금 지출의 근거에 관한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의견 14-0035 중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취지를 존중하여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규칙으로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지나치게 기술적, 전문적이어서 조례로 자세히 정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수시로 변경되어 신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 등에는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위임할수 있을 것인바, 이 경우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사례 의견18-0025 중

「지방자치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 현행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제정) 2012.06.22 조례 제209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내 제조업체 등의 취업을 장려하고, 고향사랑마음을 고취하기 위하여 애향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의 기준)** 애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내 출신(출생시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군내인 사람)이 거나 군내 학교를 졸업한 사람
- 2. 군내에 주소를 두고 군내 제조업체 등에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만 29세 이하인 사람

제3조(지원대상자 추천 등) ① 제조업체 등에서는 제2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2. 졸업증명서
- 3. 근무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 4.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서
- 5. 지방세납세증명서
- ② 제1항제1호·제5호는 공적 장부의 확인으로 갈음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심사)** ① 장려금 지원대상자 심사 순위는 장기근무경력자, 소득이 낮은 사람(최근 6개월간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납부액) 순으로 한다.

② 군수는 각 제조업체 등에서 추천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확인과정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선발한다.

**제5조(지원 범위 및 시기)** 장려금은 한 사람당 한번만 500천원을 지급하되, 반기 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바로 돌려받아야 한다.

- 1.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2. 장려금을 지원받고 6개월 이내에 퇴사하거나 주소를 이전한 경우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자명부의 비고란에 돌려받은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요원 위촉) ①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군정 홍보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홍보요원은 애향심으로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군 공고 제2020-912호

##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2020년 7월 2일

## 거 창 군 수

-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시행규칙」
- 2. 개정이유: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가 전부개정 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서식 등을 규정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제2조)
  - 1) 기업, 상시고용인원
- 나. 지원대상의 세부기준을 정함(제3조)
- 다. 지원신청 구비서류 구체화함(제4조)
- 라. 지원대상자 우선순위를 정함(안 제5조)
- 마. 지원 범위를 정함(안 제6조)
- 바. 사후관리를 정함(안 제7조)
- 4. 입법예고 기간 : 2020. 7. 2. ~ 2020. 7. 22.(20일간)

#### 5. 의견제출

가. 이 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경제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다. 제출할 곳

- 1)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경제교통과)
- 2) 전화 055-940-3373, 팩스 055-940-3349, 이메일 hure20@korea.kr

###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총괄담당 【☎(055) 940-33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시행규칙」제정안 1부. 끝.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	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 지원조례	시행규칙	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刊	고

거창군 규칙 제 호

##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 가. 본사, 지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일 것
  - 나. 상시고용인원이 3명 이상일 것
- 2.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 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 원
  - 나.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 제3조(지원조건)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

- 다) 제3조에 따른 애향장려금 지원대상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본인 또는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군에 둔 사람
- 2. 군 소재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3. 취업일 이전 10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제4조(지원신청) 조례 제4조에 따라 애향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속 기업 대표의 근로자 추천서와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애향장려금 지원대상 을 심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우선 순위를 먼저 고려한다.
  - 1. 장기근무경력자
  - 2. 소득이 낮은 사람(최근 6개월간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납부액으로 확인한다)
- 제6조(지원 범위) 애향장려금은 한 사람당 한 번만 500천원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장려금의 투명한 지급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려금 지급자 명부를 작성하여 10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애향장려금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자명부의 비고란에 돌려받은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	기간	30일
성	 명			성 별	남·여	생년	월일		
주	소				-	연 르	<b>낚</b> 처		
등록기	준지								
기 업	명								
취업년	월일				근무부	Ч			
졸업학교명 (중고등학교에 한정함)					졸업년월역	일			
금융기관					계좌번호	-			
Talaia :	<u> </u>	÷[ T]	1 11 1	L 4	710 71 1	120 7 21	TU 4 0	UI -	1 0101 7101 011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애향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거창군수 귀하

제출서류	1. 졸업증명서 1부(중고등학교 중 택 1)	2. 근로자 추천서 1부(근무기업 대표 발행분)
담당자 확인서류	1. 주민등록초본	2. 기본증명서

※ 아래 행정정보에 동의하는 경의 "동의여부"에 해당 동의서류에 √하세요.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동의여부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 애향장려금 허위신청에 대한 지급 취소 안내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따라 신청한 애향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거짓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신청인이 확인하는 것에 대해 아래의 날인으로 갈음합니다.

년 월 일

확인인

(서명 또는 인)

## 근로자 추천서

근 로 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인적사항	주소		
기 업 명		연 락 처	
근무부서		취 업 일 (근	·무기간 년)
추천자격	직위	성 명	
추천사유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위 사람을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 업 명

대 표:

(서명 또는 인)

#### 거창군수 귀하

제출서류 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애향장려금 허위신청에 대한 제재 안내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한 애향 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거짓 및 부정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소속기업의 근로자에게는 추천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확 인 인

대 표: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 거창군 근로자 애향장려금 지급자 명부

(단위: 천원)

연번	지급연도	지급액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등록기준지	졸업학교	기업명	소재지	취업일	비고

#### [ 작성요령 ]

- 1. 생년월일은 성별까지 기재
- 2. 주소는 시·군·구 읍면동까지만 기재
- 3. 등록기준지는 시·군·구 읍면동까지만 기재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 11.] [법률 제16799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u>"공장"이란</u>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5. 12.] [대통령령 제30672호, 2020. 5. 12., 일부개정]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 □ 「근로기준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3. "근로"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 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1. 파견근로자의 수
  -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 3. 파견 사유(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그 밖에 파견근로자의 근로 장소
  - 5. 파견근로 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 · 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
  - 6.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시작일에 관한 사항
  - 7. 업무 시작 및 업무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 8. 휴일 · 휴가에 관한 사항
  - 9.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 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11. 근로자파견의 대가
-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사용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 게 제21조제1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제공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0. 7. 1] [대통령령 제30395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 □ 「국민연금법」

[시행 2020. 7. 1] [법률 제16867호, 2020. 1. 21, 일부개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2. "사용자(使用者)"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 3.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4.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全員)의 기준소 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 5.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 (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6.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 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 7. "지역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제9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 8. "임의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 9. "임의계속가입자"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로 된 자를 말한다.

- 10. "연금보험료"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는 금액을 말한다.
- 1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12.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13.~19. (생략)
- ②~④ (생략)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28호, 2019. 12. 3, 일부개정]

-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 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신설 2017. 4. 18.>

###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의견 20-0024 중

살피건대,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호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사업에의 보조금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보조금 지출의 요건은 보조금 지출의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라는 것이고

보조금 지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례에만 규정하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조례에 보조금 지출의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법」제23조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여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의견 14-0035 중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취지를 존중하여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규칙으로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지나치게 기술적, 전문적이어서 조례로 자세히 정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수시로 변경되어 신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 등에는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위임할수 있을 것인바, 이 경우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사례 의견18-0025 중

「지방자치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이나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거창군 공고 제 2020-922 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창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 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 2020년 7월 3일

### 거창군수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창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민들이 조례·규칙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올바른 언어생활 및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4개 조례 4개 용어, 3개 규칙 3개 용어

- 1) 앙양하다⇒ 북돋우다 분기하다⇒ 갈라지다 지주목 ⇒ 버팀목 통리⇒ 총괄
- 2) 도말 하다⇒ 지워 없애다 해득⇒ 이해

쌍태아 ⇒ 쌍둥이

- 3. 제정 조례안 및 규칙안 : 붙임
-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기획예산 담당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주 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 다. 우편번호 : 51032, 전화/팩스 : 055-940-3073/3029 이메일 : sun815@korea.kr
  - 라.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5. 입법예고문 게재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 [붙임]

##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창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2020-
번호	2020-

제출연월일	2020. 7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 1. 제안 이유

주민들이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올바른 언어생활 및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안 제1조~제4조)

- 1) 4개 조례 4개 용어
- 2) 앙양하다⇒ 북돋우다 분기하다⇒ 갈라지다 지주목 ⇒ 버팀목 통리⇒ 총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나) 예고결과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창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거창군 포상 조례」의 개정) 「거창군 포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순화 앙양에"을 "순화를 북돋우고"로 개정한다.

제2조(「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의 개정) 「거창군 온천의 공동 급수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분기하여"를 "갈라져서"로 한다.

제3조(「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의 개정)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통리"를 "총괄"로 한다.

제4조(「거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의 개정) 「거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지주목"을 "버팀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제출연월일	2020. 7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 1. 제안 이유

주민들이 조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올바른 언어생활 및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안 제1조~제3조)
  - 1) 3개 규칙 3개 용어
  - 2) 도말 하다⇒ 지워 없애다 해득⇒ 이해 쌍태아 ⇒ 쌍둥이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나) 예고결과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규칙 제 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거창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의 개정) 「거창군 지방 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해득"을 "이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를 "지워 없애거나 고쳐 적을 수 없다."로 한다.

제2조(「거창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의 개정) 「거창군 지방 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해득"을 "이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를 "지워 없애거나 고쳐 적을 수 없다."로 한다.

제3조(「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중 "쌍태아"를 "쌍둥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제24조제2항(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6.

## 거 창 군 수

1.공고명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공고기간 : 2020.07.06.~ 2020.07.21.(15일간 )

3.대상차량

순번	차량번호	차명	모델연도	운행정지사유	운행정지일자
1	53구8566	BMW 320d	2014	기타	2020. 7. 6.

#### 4.내용

-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거 소유자의 요청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를 명하였으며, 해당 자동차는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 나. 자동차사용자(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7의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2의2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자동차는 직권말소 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민원소통과(☎ 055-940-3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거창군 공고 제2020-940호

## 공시송달공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처분 사전 통보(형남호\*)』등에 관한사항을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감)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0년 7월 8일거 창 군 수

1.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 처분 사전 통보[형남호\*]

2. **법적근거**: 「건축법」제79조, 「행정절차법」제21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건축주 (행위자)	위반건물 소재지	처분원인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주소	반송사유
1	농업법인 누리농산 주식회사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개화2길 136	무단용도변경 (「건축법」제19조) 지상1 창고시설을 주택용도로 용도변경 지상1 창고시설을 근린생활시설[사찰] 용도로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처분 사전 통보 제출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개화2길 136	폐문부재 [이사감]

4. 공고기간: 2020. 7. 8. ~ 2020. 7. 23.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시군구보

6. 안내사항

- 가. 시정기한 내 미이행시에는 즉시 「건축법」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같은 법 제111조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조치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행정담당(☎055-940-3602~5)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성명     주민(법인)       (명칭)     등록번호
3 . 의 견
4 .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ol> <li>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li> <li>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li> <li>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li> </ol>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